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김선민 · 김재원 · 신장식
서왕진 · 차규근 · 강경숙
황운하 · 박은정 · 정춘생
전종덕 · 이해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살은 파산 · 실업, 경제적 빈곤, 성과중심 문화와 과도한 경쟁, 집단 따돌림, 고독 · 우울 · 불안 ·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에 해당함.

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마치 자살은 단지 개인적 문제일 뿐이라는 오해를 낳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. 자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· 경제적 · 문화적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· 경제적 · 문화적 환경 개선 노력과 자살위해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

구축·운영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덧붙여 건축·교량·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, 경찰청장,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항, 제2조의2제5호아목·자목, 제4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).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,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환경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.

제2조의2제5호아목을 차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자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요인의 발굴 및 개선

자. 자살유발환경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정책 시행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개인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위해 물건 및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시설물 자살시도방지체계의 구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)에 자살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경찰청장, 소방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과 자살시도방지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자살시도방지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,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본정책) ① (생략)	제2조(기본정책) ①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환경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제2조의2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의2(정의)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“자살예방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	5. ----- -----.
가. ~ 사. (생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아. 자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요인의 발굴 및 개선

<신 설>

안. (생 략)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책무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자. 자살유발환경 개선을 위
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
축 및 정책 시행

차. (현행 아목과 같음)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
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
회적·경제적·문화적 환경을
개선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
·시행하여야 하며, 개인이 자
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
하기 위하여 자살위해물건 및
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지속적인
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
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의2(시설물 자살시도방지
체계의 구축) ① 국가 및 지방
자치단체는 시설물(「시설물의
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
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
물을 말한다)에 자살시도를 방
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
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자살시도 방지 조치에 관

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경찰청장, 소방청장,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과 자살 시도방지협의체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자살시도방지협의체의 구성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자살시도 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